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 5-1-3

규정번호 5-1-3
제정일자 2001.3.1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9차 개정
관리부서 교무입학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2와 우리대학 학칙 제59조에 의거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 이라 한다)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4.)

제2조(산업체의 범위) ① 산업체위탁교육에 있어 산업체의 범위는 관할청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다.(신설 2015.06.15)

② 산업체위탁교육에 있어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6.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신설 2024.7.24.)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9.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위탁형태) 단독위탁과 연합위탁으로 구분하며, 산업체 대표와 우리대학 총장과의 위탁교육계약에 의하여 입학전형한다.

제4조(설치학과) ① 설치학과는 관할청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다.(신설 2015.06.15)

② 우리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며, 수업연한은 본과정 모집단위의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5조(학생수 및 학급편성) ① 모집학생수는 관할청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다.

② 학급편성은 40명 단위의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5.06.15)

제6조(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 ① 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우리대학 학칙 및 학사내규에 의한다.

② 위탁생이 자발적으로 위탁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제적처리 한다. 단, 위탁생이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과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학업을 유지한다.(개정 2015.06.15.,2024.7.24)

1. <삭제(2024.7.24.)>
2. <삭제(2024.7.24.)>
3. <삭제(2024.7.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06.15)

1.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한 경우
2. 위탁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제7조(위탁생의 선발기준) ① 위탁생의 선발기준은 관할청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다.

② 위탁생은 위탁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아 우리대학에서 정한 입학전형 절차에 의거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8조(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위탁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탁산업체 임직원 및 우리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1/2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개정 2016. 9.28., 2018.08.27)

③ 위탁교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뢰 산업체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개정 2024.7.24.)
2. 위탁생의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
3.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신설 2024.7.24.)
4.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산업체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세칙) 위탁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할청의 운영지침과 우리대학 학칙·학사내규 및 위탁교육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다.(개정 2016.9.28)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55> <생략>

<56> 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①,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관할청"으로 하고, 제2조9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관할청장"으로, 제3조, 제8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7> - <102>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8조제2항, 제9조)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2조제2항제7호,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1호·제3호)